

# **한국콘텐츠진흥원-중앙대학교 상호교류 · 협력 협약서**

한국콘텐츠진흥원과 중앙대학교(이하 ‘양 기관’)은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, 교육과 연구 분야의 교류 증진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(목적)** 본 협약은 문화콘텐츠 관련 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양성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협력함으로써 ‘양 기관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협력내용)** ‘양 기관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.

1. 콘텐츠 창작 소재 개발, 콘텐츠 창작, 콘텐츠 비즈니스 등 콘텐츠 산업 발전과 관련된 제반 업무 협력
2. 양 기관의 공간, 장비 등 시설의 교차 활용
3. 학생들의 현장실습 등 프로그램 공유 및 활용
4. 기타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사항

**제3조(협력방법)** ‘양 기관’은 인적, 물적 자원의 제공 및 교환, 교육, 자문 등의 방법으로 협력하며,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중앙대학교LINC사업단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.

**제4조(정보교류)** ‘양 기관’은 상기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 정보의 상호 제공과 공동 활용에 적극 노력한다.

제5조(비밀유지) ‘양 기관’은 상호 교류를 통하여 지득한 기밀 및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6조(협약기간) 본 협약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2년간 유효함을 원칙으로 하되, 만기일 6개월 이전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2년씩 그 효력이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 다만 협약 당사자 간의 별도 합의가 있을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
제7조(효력발생) 본 협약은 협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‘양 기관’이 각 1부씩을 보관한다.

2015년 9월 8일

한국콘텐츠진흥원

원장 송성각

중앙대학교

총장 이용구

송성각

이용구